##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08년 11월 21일 김혜성 의원외 14인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48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(2008년 12월 15일) 상정 의결

#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김혜성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 군인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시민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 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-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, 표창, 위문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)
-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
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	답 변 내 용
0	재향군인회법을 보면 재향군인회가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타당한가?	○ 현재도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사회 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그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 (김혜성 의원)
0	개별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면 기타 다른 단체들의 조례 제정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?	○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동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. (김혜성 의원)
0	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으며,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서도 지원이 가능한데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보는데?	○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임. (김혜성 의원)
0	제5조에서 정한 '재향군인회 업무에 대한 교육사업'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보는데?	○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향군인회가 하는 일에 대한 교육사업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내용임.(김혜성 의원)
0	우리 시가 제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인데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?	○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을 것으로 봄. (사회복지과장)
0	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수익사업이 많다. 그 수익으로도 충분히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데 조례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?	○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 (사회복지과장)

#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반대토론

○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또한,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서도 지원이 가능함. 이러한 실효성과 타당성이 없는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.

#### 나. 찬성토론

- 경기도에서도 같은 조례를 공포한 바 있으며, 기존에 지원하던 사회 단체보조금 외에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닌 재향군인회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조례안이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- 6. 소수의견 요지
  - 반대토론 내용과 같음.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「대한민국재향 군인회법」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재향군인"이란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  - 2. "재향군인회"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"부천시재향군인회"(이하 "재향군인회"라 한다)를 말한다.
- 제3조(시민의 책무)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부천시 (이하 "시"라 한다)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재향군인의 예우) 부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.
  - 1.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  - 2.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 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
  - 3. 저소득 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
  - 4.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5조(보조금의 지원)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

- 2. 재향군인회 회원의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회업무에 대한 교육 사업
- 3.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 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
- 4.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- 5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
- 6.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
- 제6조(보조금 신청 등)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,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「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7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할 수 없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

의 안호	제354호
의 결	2008. 12. 22.
년월일	(제148회)

발의년월일 : 2008. 11. 21.

발 의 자 : 김혜성 의원 등 15인

#### 1. 제안이유

○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 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- 재향군인에 대한 의전, 유공자 표창, 위문 및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.
-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산 지원 및 대상사업을 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함(안 제8조).

## 3. 참고사항

- 제정 조례안: 붙 임
-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 없음
- 관계 법령발췌서: 붙 임
  - ·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제5조·제6조·제16조
- 관련 사업계획서: 해당없음
- 예산수반사항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사전예고 결과: 해당없음

##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「대한민국 재향 군인회법」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"재향군인"이라 함은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  - 2. "재향군인회"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"부천시 재향군인회" (이하 "재향군인회"라 한다)를 말한다.
- 제3조(시민의 책무)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부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예우) 부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
  - 1.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  - 2.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
  - 3.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
  - 4.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5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지원대상 사업)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  - 2.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
  - 3.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
  - 4.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  - 5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
- 6.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
- 제7조(보조금 신청 등)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,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「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적용한다.
- 제8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·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